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 (제정일괄)

◇ 행정규칙명

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301)

◇ 제 · 개정 이유

「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608)」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301)」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제5조제2항제1호를 "층마다 설치하되,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"으로 한다.

나.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